

#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2. 6. (화성시장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 
(2023. 12. 19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 (신현배 기업지원과장)

### 가. 제안사유

#### 1) 추진근거

- 「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,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- 「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(민간위탁의 동의 요청)
- 「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」 제5조(관리·위탁운영)

#### 2) 추진 필요성

-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 위탁 기간(2022. 3. 4. ~ 2024. 3. 3.)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
- 「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및 「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(민간위탁의 동의 요청)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위탁사무 내용

- 공예문화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
- 공예품의 제작·홍보 및 전시·판매
- 공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
-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
- 그 밖에 공예품 판매촉진 등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## 2) 위탁시설 개요

구 분	내 용
소재지	·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안길 24-9 (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부지 내)
위탁현황	· 현 수탁기관: 화성시공예사업협동조합 (대표 : 이성재) · 위탁 기간 : 2022. 3. 4. ~ 2024. 3. 3. (2년)
시설규모	· 446.4㎡
주요시설	· 전시실, 체험실, 작업실, 사무실 등

## 3) 민간위탁기간: 2024. 3. 4. ~ 2027. 3. 3.(3년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동의안은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, 「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,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공예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예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2. 6. (화성시장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 
(2023. 12. 19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 (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)

### 가. 제안사유

- 1) (재)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(구성 및 직무 등)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 삭제 (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).
- 2)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 수정 (안 제10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,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,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입법체계성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2. 6. (화성시장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 
(2023. 12. 19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 (김순희 하수행정팀장)

### 가. 제안사유

- 1)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및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수단 명확화, 분뇨 수집·운반비 인상 등을 통해 그간 운영상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법 개선 (안 제20조)
  -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단위단가 등 산정기준 마련
  -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 방법 개선  
(기존) 산술평균 적용 → (변경) 기하평균 적용
- 2)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 및 부과·징수 시기 명확화 (안 제20조, 안 제22조)
  - 지방자치단체의 시보, 게시판,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
  -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·징수 시기 명확화
  - 원인자부담금 부과·징수 시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일치
- 3) 하수도사용료 및 수수료 소멸시효 규정 삭제(현행 제26조 삭제)
  - 민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, 이를 재차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함
- 4) 체납액 징수수단 명시를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 (안 제27조)
  - 체납액 징수에 대한 근거 명확화(「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」 준용)

5) 분뇨처리 수집·운반비 인상을 통한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현실화  
(안 제23조)

- “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수집·운반비 산정 연구용역” 결과를 조례에 반영(용역: 2023. 2. ~ 4.)
- 수집·운반 수수료 연차별(3차) 인상 (최종 27.6% 인상)

6) 기타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 반영 (안 제13조, 안 제16조)

- 수질, 하수도 사용료 관련 준용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 
⇒ (기존)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⇒ (변경)물환경보전법
- 상수도 및 지하수 외 사용자에게 대한 하수배출량 산정 시 조례 제5조에 따른 신고량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, 제5조는 2016년 조례개정에 따라 삭제됨
-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,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과 기타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,

나.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, 본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, 분뇨 처리수집·운반비 인상을 통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안정적인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2. 6. (화성시장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 
(2023. 12. 19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 (과재홍 자원순환과장)

### 가. 제안사유

- 1) 전입 인구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종량제 봉투(소각용) 지원을 전입세대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종량제봉투(소각용) 수수료의 감면을 화성시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까지 확대 (안 제28조제1항제2호의2).
- 2) 수수료의 감면 확대 대상이 되는 세대에 종량제봉투(소각용) 지급내용 구체화 (안 제28조제4항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의거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

나.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,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을 관외 전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화성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

#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2. 6. (김상균 의원 등 13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 
[2023. 12. 19. **부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)**]

## 2. 제안요지설명 (김상균 위원)

### 가. 제안사유

- 1)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2) 수산물 유해물질 안정성 조사 의뢰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3) 시민 또는 단체가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7조)
- 4)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

나. 검토결과,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 및 수산물 판매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.

다. 다만,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의 근거하여 본 조례에 화성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부결 (표결결과 찬성 3인, 반대 3인)

※ 찬성위원: 배정수, 위영란, 장철규

※ 반대위원: 공영애, 김종복, 조오순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